

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소방청장은 「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의 중앙 구조·구급정책협의회의 운영에 따른다.

제3조(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119긴급신고 시행계획(이하 “시·도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119접수센터 근무자의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
3.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법 제20조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
5. 그 밖에 119긴급신고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

제4조(119긴급신고 업무의 처리)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
2. 재난상황에 따른 관련기관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
3. 재난현장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에 관한 사항
4. 재난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
5. 119긴급신고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119긴급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119접수센터 설치·운영)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법 제10조제1항의 119접수센터를 설치하고, 119접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요건

을 갖추어야 한다.

1. 119긴급신고의 접수, 출동지령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
2. 119긴급신고 내용 및 음성 등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체계
3. 119긴급신고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·장비의 운영·관리체계

4. 119접수센터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

② 119긴급신고 전화를 수용하는 정보통신 회선은 이중화로 구성한다.

③ 그 밖에 119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6조(비상접수 체계)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119접수센터가 폐쇄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경우
2. 대형재난 등으로 119긴급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②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119긴급신고 예비회선 및 교환장치
2. 비상접수대 등 119긴급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장치

③ 그 밖에 119비상접수 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이용·관리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
(이하 “소방청장등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119긴급신고의 접수, 출동 및 공동대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을 다 한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제1항의 119정보통신시스템을 119긴급신고 공동대응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
④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을 연 1회 이상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8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등)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법

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

제9조(공동대응 및 협력 요청 방법 등)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

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, 유·무선통신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1. 사고유형 및 사고위치
2. 사고 내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원
3. 요청기관 및 연락처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공동대응 및 협력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119영상 촬영·관리·보호)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소방기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마련하는 영상정보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5. 영상정보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

6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8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9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)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그 목적, 연계대상 정보 내용과 범위, 연계방식, 보안성,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
- 3)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	200	400	5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정보통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271